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4년 7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
- 나.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
- 다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
- 라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- 마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다. K-OTC시장 운영규정
- 라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- 마.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바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
- 사. 표준투자권유준칙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(자사보증 유동화증권 한시적 완화조치 적용기한 연장)
- 나.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(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자산자본 산정기준 개선)
- 다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(책무구조 도입 및 내무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)
- 라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주식·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(2024/6/25 개정·2024/6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증권사가 자사보증 한 유동화증권 비일시적 보유의 경우 한시적 위험값 완화 조치 시행을 추가 연장하기 위함
 - 2022년 11월 시장안정을 위해 단기자금시장경색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시 보유가 아닌 경우라도 증권사가 자사보증 한 유동화증권을 비일시적 보유하더라도 기존 일시 보유에 따른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적용

2) 주요 내용

- 한시적 완화조치의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는 부칙을 개정
 - 자사보증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시적 위험값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6월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
 - 단, 적용 가능한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2025년 1월 이내로 제한

나.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(2024/6/12 개정·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자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, 위험자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□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(별표 4 제4호)

-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고,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(20%→30%)
 - 기존 충족(+1), 미충족(0)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(+1), 부분충족(+0.5), 미충족(0)으로 세분화

□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자산자본 산정기준 개선(별표 5 제1호)

-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, 등급간 위험자산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
 - 3⁺~3⁻ 구간의 등급간 위험자산자본 차이를 1.5%p로 동일하게 설정

다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(2024/6/26 개정 · 2024/7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책무구조도 도입,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4. 1. 3. 공포, 7. 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,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직원 규정(제14조의2)

-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임원에 ‘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’을 포함

□ 책무구조도 작성 · 제출 등 관련(제14조의3)

- 대표이사등은 각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(책무기술서)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(책무체계도)를 작성
 -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,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함
-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

□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(제15조)

-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추가

라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2024/6/26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주식·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(제23조 제2항 제2호)

- 자산담보 중 주식·부동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을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관리조치 개선)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외환시장 환율 사용 등 관련 조문 정비)
- 라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및 국제금시세 산출시 사용환율 관련 개정)
- 마.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 변경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4/6/14 개정 · 2024/6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·증권위가 검찰 고발·통보한 사례 중 실질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(제50조 제1항 제3항)
 - 금융위·증권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·통보시 상장관리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부기하여 의결하면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
 - 해당 의견이 부기된 검찰 고발 통보와 관련하여 추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별도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보지 않음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4/6/14 개정 · 2024/6/17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,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 2)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-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관리조치 개선(제61조 제1항 제3호)
 - 우량법인 등 사안에 따라 금융위·증권위가 상장관리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부기하여 의결한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변경 반영(별표 11)
 - 통계청이 제11차 개정 고시(제2024-2호, 2024.1.1.)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1의 '업종 및 코드 분류표'를 개정

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(2024/6/14 개정 · 2024/6/17 시행)
 - 제24조 제3항 제2호
 - 별표 2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6/25 개정 · 2024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2024년 7월 1일부터 서울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 - 정부는 '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'(2023.2.7.)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:00~15:30에서 09:00~익일 2:00까지로 연장을 발표

2) 주요 내용

- 외환시장 환율 사용 등 관련 조문 정비(별표 1, 별표 12, 별표 17 및 별표 24)
 - 통화상품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및 착오거래구제제한폭 산출에 사용하는 외환시장 최종 환율 등을 15시 30분 기준의 환율로 명확화
 - 통화상품거래의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외환시장 종료시점 금리를 15시 30분 기준의 금리로 반영
-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환율 체결건수 산정시간의 범위를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부터 명확화(제47조의7)

- (기존) 당일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 前의 체결건수 계산
- (개정)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 ~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 前의 체결건수 계산
-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인수도결제금액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을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부터의 환율로 반영
 - (기존) 당일 직전환율 사용
 - (개정)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부터의 직전환율 사용

라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4/6/25 개정 · 2024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변경, 서울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, KRX금시장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 - (기존) 09:00 ~ 15:30 → (개정) 09:00 ~ 익일 2:00 (2024.7.1. 시행, '외환시장구조 개선방안')

2) 주요 내용

-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및 국제금시세 산출시 사용 환율 관련 조문 정비(별표 4)
 - 국제금시세를 공표하는 금융정보업체 인수합병에 따른 상호명 변경
 - (기존) 텐포(Tenfore) → (개정) 모닝스타(Morningstar)
 - 모닝스타사가 국제금시세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제금시세의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 기준 명확화
 - (기존)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된 최종 원화 환율
 - (개정)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15시 30분 최종 원화 환율
- 수입금 품질검사 장소 기재 변경(제23조의2 제2항 제2호)
 - KRX금시장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제 변경에 따라 수입금 품질검사 장소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시설 보안성 제고 및 향후 단순 주소이전에 따른 개정수요 발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주소를 삭제

마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4/6/14 개정 · 2024/6/2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을 일부 변경하여 시장조성대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 변경(별표 4)

- 시장조성대가 산정시 '전체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의 거래량 비율' 대신 '시장조성상품 거래량 증가에 따른 반영 비율'을 반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온라인 전용펀드 취급업무 관련사항 개정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 포함)
- 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(K-OTC 지정종목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조치)
- 라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투자주의종목 · 투자경고종목 ·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)
- 마.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주관회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)
- 바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화 · 구체화)
- 사. 표준투자권유준칙 (위험등급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적용 명확화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4/6/12 개정 · 2024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 ‘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’ 행정지도의 시행 종료(2024.6.30.)에 따라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 -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(2024.2.1.)

2) 주요 내용

- 온라인 전용펀드 취급의무(제2-8조의4 제1항)
 - (적용 펀드 종류)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
 - (적용 제외 펀드) 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펀드
 -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 행위 없이 온라인에서 적용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-24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만을 판매
 -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낮을 것
 - 온라인으로 거래될 것
 - 단,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및 창구 판매용 펀드에 대한 매수 약정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추가 매수 하는 경우 제외
 - 다만, 온라인 전용펀드가 함께 설정된 경우에는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안내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적용펀드를 판매하는 경우(제2-8조의4 제2항)
 -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를 판매
 - 단,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판매채널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4/6/2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키기 위함
 -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추진 및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를 발표
 -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(2023.5.25.)
 -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(2024.5.27.)

2) 주요 내용

-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켜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근거 마련(별지 제44호)
 - 3개월~20년 만기까지 공시
 - 본회 채권정보센터(www.kofiabond.or.kr)를 통해 일별 1회 공시

다. K-OTC시장 운영규정 (2024/6/18 개정 · 2024/9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종목의 권리락 등의 발생시 기준가격 조정대상의 확대를 통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K-OTC 지정종목도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조치(제54조)
 -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을 등록법인에서 K-OTC시장 법인 전체로 확대
 - 등록법인은 K-OTC시장 내 공시가 이뤄져 해당 공시를 근거로 권리락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

— 기준가격 변경조치는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법인 제출 서류를 근거로 조치 허용

□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을 권리락에서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까지 확대(제54조)

— K-OTC시장 공시 등에 따라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 발생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준가격 변경 조치

□ 권리락,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, 조치일 당일 기준가격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경 등의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매매거래 정지 1일 적용(제37조)

라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4/6/19 개정 · 2024/9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시장경보제도 세부 운영 요건 및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(제11조)

— (지정) 투자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지정

— (지정 예외) 투자경고 ·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, 정리매매종목,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등

□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(제12조)

— (지정)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지정요건 해당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

— (지정 예외) 정리매매종목,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종목

— (지정 해제)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에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

□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(제13조)

— (지정) 투자경고종목 중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지정 요건 해당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

— (지정 해제)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에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

- 투자경고·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마련(제9조의2)
 - 시장경보제도 적용을 위한 기간의 계산, 기준가격 산정기준 등의 마련(제14조)
-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기준가격 산정기준 정비(별표 2)
 -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이 권리락 조치에서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 조치까지 확대
 - 배당락 조치를 할 경우 기준가격 변경조치를 위한 이론 배당락주가 산정기준 마련
-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는 주식배당의 공시시기를 '배당기준일 15일 전'으로 변경(별표 4)
 - (기존) 이사회결의로부터 1일 이내(사업연도말 15일전)
 - (개정) 이사회결의로부터 1일 이내(배당기준일 15일 전)
- 본점 소재지 변경 등 공시 관련 정비(별표 4)
 -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본점소재지 변경 공시시기 변경
 - (기존) 주주총회일로부터 1일 이내
 - (개정)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
- 특허권 공시 관련 정비(별표 4)
 - 특허권 취득 신고시기를 특허 등록일에서 특허 수수료 납비를 기준으로 변경
 - 특허 등록일로부터 1일 이내→특허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일 이내
 - 특허취득 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'인지일'을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
 - 예) 특허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특허법인이 특허 취득 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 등

마.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4/6/28 개정 · 2024/8/1 시행)³⁾

1) 개정 이유

-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,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,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, 내부통제 강화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 - 금감원의 'IPO 주관업무 개선방안'(2024.5.9.)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 추진

3) 제3조 제2항 제8호, 제15조 제3항 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8항 및 별표 2는 2024년 8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, 제5조 제9항 및 제15조 제1항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

2) 주요 내용

□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(제3조 제2항 제8호)

- (기존)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기업실사 등 주관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, 상장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관회사는 그간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
- (개정)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그간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관업무 수행의 독립성·공정성 제고
 - 대표주관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그간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의무화

□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규정화(제15조 제3항 제1호·제2호, 제8항)

- (기존)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주관업무 수행에 따른 기업실사 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(개정) IPO 주관회사의 충실한 기업실사를 위해 구체적인 기업실사 항목·방법, 준수사항 등을 인수업무규정에 명시
 - 실사책임자(주관회사 임원)가 실사 계획·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 보고서를 검토·승인하도록 규정

□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(제5조 제9항)

- (기존)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수요예측 등 IPO 공모가격 결정 방법은 규정하나, 그 외의 세부적인 방법·절차는 부재
- (개정) 인수업무규정에서 주관회사별로 공모가격 결정(공모희망가격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포함)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·준수하도록 하여 합리성, 일관성을 제고
 - 내부기준과 상이한 방법 또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, 내부승인 및 문서화 의무화

□ IPO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(제15조 제1항 제1호~제12호)

- (기존)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주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기준 제정·운영토록 하되,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
- (개정) 인수업무규정으로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을 명시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
 -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,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
 -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,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
 - 공모희망가격 범위 및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방법에 대한 기준
 -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관련 내부 검토 절차
 - 대표주관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절차 등

바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2024/6/12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· 합리성 제고를 위한
 - 금융위 · 금감원에서 발표한 ‘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’(2024.5.13.)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,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
 -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024년 6월부터 평가

2) 주요 내용

-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· 본PF로 구별하고,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객관화 · 구체화 (제6-15조)
 - (브릿지) 경과 기관별 토지매입 · 인허가 현황, 본PF 미전환 기간, 수익구조, 만기연장 횟수, 연체여부 등
 - (본PF) 계획 대비 공사 · 분양 진행 현황, 시공사 현황, 수익구조, 만기연장 횟수, 연체여부 등
- PF 사업장 평가대상을 확대하고,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4단계(양호 · 보통 · 유의 · 부실우려)로 세분화(별표 17-1)
 - 금융투자회사의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
 - (PF 사업장 평가대상 확대) PF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
 - 금융회사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에서 예외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
-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, 평가결과에 대한 금감원 점검 강화 (별표 17-1)
 - (유의) 재구조화, 자율매각 추진
 - (부실우려) 상각, 경 · 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

사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24/6/28 개정 · 2024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」(이하 ‘위험등급 가이드라인’)시행(2024.3.1.) 이후, 상품 위험등급 변경 이후 추가납입 시 판매규제 적용여부, 판매사의 ETF 재검증 의무 관련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- 금소법 시행 후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된 금융위 행정지도인 「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지침」내용 중, 업계 영업관행 근거 마련 등 일부 필요사항을 표투에 반영한 후 감독당국은 동 행정지도의 폐지를 추진

- 2021.7.5. 시행(1년 단위 연장), 2024.7.4. 만료

2) 주요 내용

가)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적용 명확화

□ 추가납입시 투자자 보호 절차 정비(회사참고사항 8-1 개정)

- (적용대상) 재산정으로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된 추가적립 가능 펀드 및 최초 계약에 따라 동일한 상품을 매입하는 금전신탁(지정형)
- (평가시점 등) 투자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최소화라는 판매규제 취지를 고려하여, 추가적립 시 적정 여부에 대해 평가
 - 적정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동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 적립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
 - 위험등급이 변경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설명서, 상품설명서,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제공

□ 판매사의 ETF 재검증 의무 합리화(참고3, 회사참고사항 II.2-1)

-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은 판매사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 위험등급을 검증하여 설명(금소법 제19조 제1항)토록 한 것
 - 금융회사가 개입 없이 투자자 간 체결되는 거래는 동 가이드라인의 직접적 적용이 곤란
- ETF는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중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(예: 신탁계약 체결시 ETF 편입을 권유)에 한하여 판매사 재검증 대상에 포함

나)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지침 내용 일부 반영(회사참고사항 8-1)

□ 금소법 시행 초기 적합성 평가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행정지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

- 일별 적합성 평가횟수 제한, 소비자 재평가 요구 기록유지 등 업무 근거가 필요한 사항만 표준투자준칙에 반영하여 운영
- (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 제한) 판매자는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소비자가 평가결과 확인 후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
 - (대면거래)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 불허를 원칙으로 하며, 착오 또는 단순 오기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
 - (비대면거래)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, 1일 평가 가능횟수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, 고객특성,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

- (기록·유지)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 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·유지할 필요

아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4/6/4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2024년 7월부터 8%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(2024년 6월 말까지 12%)를 6개월 유예하여 2024년 말까지는 12%를 유지토록 발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
 -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건전성·유동성 현황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 등을 위해 ‘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’를 개최(2024.5.21.)

2) 주요 내용

- 여전채 편입한도 8% 적용시기 유예
 -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 한도 ‘8% 이하’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‘12% 이하’로 함

기존				▶	개정			
구분	규제비율				구분	규제비율		
	~'22.12.30	'22.12.31.~ '24.6.30.	'24.7.1.~			~'22.12.30.	'22.12.31.~ '24.12.31.	'25.1.1.~
여전채 편입한도	15%이하	12%이하	8%이하	여전채 편입한도	15%이하	12%이하	8%이하	

*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